

이민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

Korean

뉴욕시(이하 NYC)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민자 자격, 출신 국적 또는 국가와 관계없이 근로자 권리가 주어집니다.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연간 80시간 이상 NYC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년 최고 40시간의 안전 휴가 및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휴가는 자기 자신 또는 가족으로 간주하는 사람을 돌보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가정 폭력,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 행위 또는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안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 급여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빠짐없이 급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예정된 교대 근무 전 및/또는 후의 근무에 할애한 시간은 물론 근무일에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러한 최저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최저 급여 - 요율표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패스트푸드점 직원		
근로자 수 무관	\$15.00	
기타 모든 직원		
근로자 수 10인 이하	\$13.50	\$15.00
근로자 수 11인 이상	\$15.00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특수 요율은 위와 다릅니다.



초과 근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넘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고용주가 정해진 급여의 최소 1.5배에 상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결권



근로자는 본인에게 중요한 직장 내 문제에 관한 다양한 활동에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조합을 수립하여 근로자 권리를 대변하기를 바라는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단결 행동 또는 동료 근로자들과 근무 조건에 관해 대화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거나 여타 형태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내 환경



여러분의 직장은 알려진 보건 및 안전 위험성이 없이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직업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차별 없는 직장 내 환경



시 정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한 차별 또는 괴롭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며, 이러한 특성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든 선입견이든 무관합니다.

- 이민자 자격
- 인종
- 국적
- 종교/신조
- 피부색
- 장애
- 성별
- 성 정체성
- 임신
- 성적 지향
- 체포 이력 또는 전과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위
- 간병인 지위

본인이 고용주가 아닌 독립적인 하청 계약자 또한 차별 및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됩니다.

[뒷면에 계속 >](#)



Bill de Blasio
Mayor

Consumer
Affairs

Lorelei Salas
Commissioner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Bitta Mostofi
Commissioner

Commission on
Human Rights

Carmelyn P. Malalis
Commissioner/Chair



독립적인 하청 계약자로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NY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가치의 작업을 한 데 대한 서면 계약서 체결 권리
- 적시 지급 대금 수령
- 근무한 대가로 적시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
근로자에게는 미지급된 급여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보복 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금 및 변호사 수임료와 법정 비용 등을 수금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직장을 방문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침착하십시오.
- ICE 직원과 대화하는 경우, 본인의 발언은 무엇이든 차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ICE 직원이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사유지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의해 구금된 경우 알아야 할 사항

-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ICE 직원과 대화하는 경우, 본인의 발언은 무엇이든 차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 뉴욕 경찰(NYPD)은 이민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212-788-7654),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장 내 권리

소비자 보호위원회(DCA)와 노동정책 및 표준 담당국은 NYC에서 근로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DCA 문의처:

- 311로 전화합니다(뉴욕 시외에서 전화하는 경우 212-NEW-YORK).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프리랜서 근로자 또는 공정 노동시간법 담당 부서를 찾으세요.
- 이메일 OLPS@dca.nyc.gov로 문의
- 홈페이지 nyc.gov/dca 방문

이민법 서비스

ActionNYC는 귀하의 언어로, 귀하의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무료 이민 법적 심사를 제공합니다. ActionNYC 문의처:

- 311로 연락해서 “ActionNYC” 담당자를 요청합니다.
- 홈페이지 nyc.gov/actionnyc 방문

NYCitizenship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무료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NYCitizenship 문의처:

- 311로 연락해서 “citizenship appointment” 담당자를 요청합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에서는 이민자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을 촉구하며 이민자를 위한 법률 및 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OIA 문의처:

- 홈페이지 nyc.gov/immigrants 방문

차별 방지

뉴욕시 인권위원회에는 인권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대중을 교육하고 긍정적인 지역 공동체 관계를 독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차별 행위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인권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311 또는 1-718-722-3131
- 홈페이지 nyc.gov/humanrights



Bill de Blasio
Mayor

Consumer
Affairs

Lorelei Salas
Commissioner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Bitta Mostofi
Commissioner

Commission on
Human Rights

Carmelyn P. Malalis
Commissioner/Chair